

日帝時代 政治行政研究(二)

金雲泰
(教授)

目次

- 一. 日帝時代研究의 政治行政史의 意義
- 二. 總督政治의 成立과 展開
 1. 1910~1919의 政治史의 狀況
 2. 總督政治體制의 成立
 - (1) 韓日合併과 朝鮮總督府의 設置—以上 前號既載分
 - (2) 總督政治의 性格과 時代區分
- 三. 總督政治 第二期
 1. 政治文化的 特色—憲兵警察政治(武斷政治)
 2. 統治組織
 3. 人事 財務行政

(2) 總督政治의 性格과 時代區分

韓國政治史에서 바라보는 總督政治時代는 곧 1910年 朝鮮王朝의 國家的 正統性의 墓失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같은 正統性의 墓失狀態가 일단 回復이라는 歷史的 變化를 맞이하게 되는 1945年的 民族解放에까지 포함된다.

그것은 日帝를 기준으로 할 때 國際的으로는 帝國主義侵略에 의한 保護狀態⁽¹⁾로도 說明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政治行政的으로 總督政治時代로 表示되지만 그것을 일단 韓民族을 中心으로 한 近代韓國史의 立場으로 볼 때는 韓國(즉 朝鮮王朝)의 國家的 正統性이 消失된 일종의 歷史斷絕의 悲劇임이 分明한 것이다.

韓民族으로 볼 때 이같은 國家的 正統性의 墓失 國史上 일찌기 없었던⁽²⁾ 近代的 상황에서의 최초의 悲劇이었다는 점에서 總督政治時代는 韩民族의 政治行政史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總督政治時代는 國史上 최초로 있었던 韩民族의 歷史의 斷絕로 索약되

(1) 『……至於置統監於國中 移外交於日本 遂以我四千年疆土 三千里人民 爲彼之內地屬民 非止謂世界所謂保護國而已 然爲屬民則 猶與其民爲平等對待 使之仍其居而遂其生 國雖亡而人種猶不滅矣……』(日星錄 卷4, 布告八道士民)

(2) 13세기 蒙古의 侵略에서도 高麗는 國家的 獨立을 상실치 않았으며 17세기 清의 侵略 때문에 外形的으로는 對清主從이라는 不平等關係를 맺었으나 그 속에서도 朝鮮朝의 歷史는 韩民族이 그主體가 된 自主의 歷史였다.

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韓民族이 近代的 狀況에서 맞이한 無國家狀態로 집약된다.

여기서 總督政治時代를 접근하는 우리의 政治行政史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첫째 그같은 無國家狀態에서 그것을 代置하였던 異質의 侵略統治機構 總督政治만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 남아있는 韩民族이라는 歷史主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變化하고 어떻게 作用하였을가를 밝히려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總督政治時代를 韩民族 歷史斷絕의 한 瞬間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4千年 民族史에서 어떠한 의미로 그 연관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하는 歷史永續의 한 계기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前者는 總督政治가 갖는 分類史의 의미를 橫的으로 확대시켜 그것이 갖는 民族的 側面(nationalism)을 강조 여관시키려는 것으로서 여기서 政治行政의 全體는 “國家(étatism)는 사라졌었지만 民族(nationalism)은 살아 남았었다”는 公式으로 요약된다⁽³⁾. 여기에 대하여 後者는 總督政治가 갖는 時代史의 의미를 縱的으로 연장시켜 그것이 갖는 全民族史에서의 의미와 함께 그 속에서 그 時代를 克服할 수 있는 새로운 歷史의 永續性을 찾으려는 것으로서 여기서 歷史永續의 에너지는 總督政治란 他律로 주어진 侵略의 矛盾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섰던 韩民族의 抵抗的 創造力으로 직결된다⁽⁴⁾.

우선 總督政治時代를 近代史 段階에서 맞은 韓國史 最初의 歷史斷絕로 說明하려 할 때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實踐主體의 斷絕과, 둘째 歷史敘述主體의 斷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總督政治로 인하여 韩民族이 韓國史의 主體노릇을 하지 못한 歷史實踐主體의 斷絕은 36년(1910~1945)으로 압축되지만 다음으로 제기되는 韩民族의 自己歷史를 叙述하지 못함으로 해서 잃은 歷史의 斷絕 즉 歷史敘述主體의 斷絕로 해서 입은 民族史의 喪失은 4千年歷史 온 구석에 침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자못 심각해진다. 즉 韩民族의 歷史敘述에서 傳統的으로 승인되어 온 그 叙述法則은 곧 歷史를 직접 담당한 그 實踐主體와 그 歷史를 記述하는 그 叙述主體가 반드시 分離되어 왔다는 批判史觀이었던 바⁽⁵⁾, 그같은 叙述法則은 王朝의 終末에 日帝侵略으로 변질되었을 때 朝鮮朝 5百年에 대한 叙述의 任務를 侵略者 日帝가 맡게 함으로써 侵略으로 인하여 잃은 歷史實踐主體의 단절은 불과 36년이지만 歷史敘述主體를 빼앗김으로 해서 잃은 歷史는 5百年(朝鮮朝) 아니 4千年 온 歷史에 미치고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歷史의 主體를 民族的 側面(nationalism)과 國家的 側面(étatism)이라는 2側面으로 分離시킬 때 無國家狀態였던 日帝時代의 歷史斷絕이 극복될 수 있다.

(4) 그 契機가 바로 3.1運動이며 그렇기 때문에 日帝時代 政治行政史는 總督이란 統治體系뿐만이 아니고 韩民族이 中心이 된 政治過程, 政治文化 및 大衆運動이란 側面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5) 여기서 三國時代歷史는 三國時代가 지나간 高麗朝에 와서야 整理되고(三國史記 三國遺事) 또 高麗時代歷史는 그 高麗時代가 지나간 朝鮮朝에 와서 整理되었다. (高麗史 高麗史節要)

바로 總督政治로 인하여 이같이 깊이 파인 歷史의 斷絕을 의식하는 데서 總督政治時代에 대한 政治行政史的 時代區分論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같은 時代의 性格을 일단 그前提로하여 總督政治時代를 時代區分하려 할 때 그統治機能을 中心으로 하는 分類史的 입장, 즉 政治行政史的 입장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敘述的 分類가 可能해진다.

그것은 곧 韓民族의 3.1運動을 中心으로 하여 저들의 總督政治가 근본적으로 變質하게 되는 總督政治의 前後 兩段階를 말한다. 이것을 圖式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期區分	性 格	總 督	期 間	備 考
第一期	憲兵警察 政 治 期	① 寺 内 正 敏	1910.10.1~1916.10.9	1927.12.10까지 形式上 在任
		② 長 谷 川 好 道	1916.10.16~1919.8.12	
第二期	懷柔撫取 政 治 期	③ 齊 藤 實 (臨) 宇垣一成	1919.8.12~1927.3.10	
		④ 山 梨 半 造	1927.4.15~1927.10.1	
		⑤ 齊 藤 實	1927.12.10~1929.8.17	
		⑥ 宇垣一成	1929.8.17~1931.6.17	
		⑦ 南 次 郎	1931.6.17~1936.8.5	
		⑧ 山 磯 國 昭	1936.8.5~1942.5.29	
		⑨ 阿 部 信 行	1942.5.29~1944.7.22	
			1944.7.25~1945.8.15	

여기서 第一期는 日帝側에서 보면 韓國에 그들의 力量을 확고히 扶植하여 國家의 合併事業을 달성하는 植民政策의 制度化 初期로서 그 性格은 어디까지나 徹底한 武力에 의한 武斷統治時期였다. 그리고 이같은 武斷統治는 世界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軍事力이 직접 統治組織의 根幹을 이루고 참여하는 소위 憲兵警察政治의 形式을 取하고 있었다.

즉 朝鮮總督下에 警察總監部를 두고 그 責任者인 警務總長에 朝鮮駐箚憲兵司令官인 陸軍將官을 充員케 함으로써 同總長에게 軍事警察權과 一般警察權을 함께 부여하고 있었다. 그것은 武力에 의한 國家併合을 強制로 實施하려는 侵略政策의 一環으로써 여기서 總督政治는 保護國과 같은 一般殖民統治方式과 근본적으로 다른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이같은 憲兵警察政治를 위하여 朝鮮總督에게는 「制令」의 制定 및 公布權 등 立法權과 함께 司法權까지 獨占管掌케 함으로써 總督은 立法·司法·行政을 總攬하는 韓國의 君主的⁽⁶⁾地位를 占하고 있었다.

이같은 憲兵警察制度에 의한 軍事專制體制는 단적으로 歷代總督들을 반드시 저들의 陸海軍 現役大將들로 補任하는 初期人事政策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⁷⁾. 이것은 곧 總督

(6) 그것은 朝鮮朝의 傳統君主보다 더욱 強한 權限을 行使하였다. (朝鮮朝에는 議政府와 三軍府로 文武 大權이 分離되는 傳統이 있었다.)

(7) 寺內正敏는 現役陸軍大將으로서 陸軍長官을 兼任하고 있었으며 (1911년 8월 總督에 專任) 長谷川好道도 元帥로서 陸軍大將이었다.

政治가 그 초기에는 占領地에 대한 軍政의 形式을 取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바 그것은 한 편으로는 비록 韓日合併이 形式으로는 條約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韓國의 民族的 抗爭은 單純한 抗戰 以上의 抵抗力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하여 日帝의 侵略政策도 철저한 軍事專制體制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憲兵警察政治體制는 1912年과 1915年 兩次에 걸친 官制改革을 통하여 그 統治機能이 더욱 擴張強化되어졌다.

여기에서 대하여 總督政治 第二期는 日帝가 주장한 소위 文化統治期로서 從來의 武力支配方 式을 다소 改變하여 韓國人에 대한 懷柔策으로서 外形의으로 그 統治方式를 文化統治方式으로 轉換하였던 時期이다. 따라서 第二期 統治體制는 第一期의 憲兵警察制度로 부터 一般警察制度로 그 外形의 轉換을 하였으나 그 統治의 實質과 內容에는 여전한 植民榨取方式을 그 대로 계속하고 있었다.

여기서 第二期 總督政治의 特色으로서 소위 高等警察制度가 나타나게 된다.

즉 第二期 總督政治에 있어서의 統治體制의 特色은

- ① 憲兵警察制度의 一般警察制度로의 轉換外에
- ② 總督任用範圍의 擴充과 그의 軍事權의 制限
- ③ 地方長官 權限의 擴張
- ④ 國民輿論 投入機關의 組織 등을 外形의으로 들 수 있다.

즉 종래에 軍人으로 補하게 되어 있던 總督을 文官으로 補하도록 하였으며 直接的으로 行使하던 軍事權을 安寧維持上 必要한 경우에만 總督이 陸海軍司令官에게 請求하여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警察, 人事, 組織 등에 있어서의 地方長官의 權限을 擴張하고, 中樞院을 改善하고 道郡面등의 協議會같은 地方諮詢機關을 다시 設置하였다. 여기에 또한 民族主義者와 社會主義者가 共同戰線으로 提携하여 組織한 新幹會와 檀友會를 合法的 政治團體로서 許容하였으며 나아가서는 每日新聞外에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의 發刊을 통하여 外形上 國民輿論의 投入路를 넓혔다.

또한 總督府 自體組織에 있어서도 종래의 「部」를 「局」으로 改稱하고 여기에 따라 종래 惡名 높던 警察總監部를 廢止하고 그 機能을 縮少시켜 警務局을 新設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總督政治 第二期도 1931年을 轉換點으로 한 宇垣總督 以後 統治期는 그 以前 統治期 즉 1919~1931년까지의 그것과 크게 그 性格을 달리하였다. 그것은 즉 總督政治를 통하여 그간 韓半島에 扶植한 侵略의 餘勢를 몰아 그들의 大陸進出을 위한 軍需兵站基地로서 韓國을 最大로 榨取하는 時期가 바로 이 時期였으며 (1931年 滿洲事變, 1937年 中日戰爭, 1939年 第二次世界大戰, 1941年 太平洋戰爭) 이에 대한 總督政治는 韓民族에게 소위 皇民化

를 위한 創氏, 學兵, 徵兵, 勞役 등을 강요하던 植民統治의 最惡期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政策은 결국 總督府의 組織의 擴大와 아울러 農·商·工業 등 生產分野에 대한 總督府의 組織機構擴張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1935年 8月 現在에는 종래에 6個局(內務, 財務, 殖產, 法務, 學務, 警察)이었던 總督府職制에 다시 農林局이 設置되었으며(1932年 追設) 本府外廳機關으로 存置해 왔던 遷信局이 1945年에는 內局의 遷信局으로 新設되어 本府 內局이 八個局이 되었다(內務局 廢止).

이상과 같은 總督政治展開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時代區分論을 가능케 한 歷史的 轉機가 3.1運動이라는 史上 類例없는 植民統治下에서 보여준 韓民族의 民族的 抵抗力이었다는 사실인 것이다⁽⁸⁾. 그것은 日帝에 의하여 장악된 統治過程을 植民狀態下의 韓民族의 意志가 결합된 抗拒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變質시킨 總督府 政治體系의 새로운 形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보다 본질적으로 韓民族의 政治史란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總督 政治에 대한 단순한 前·後 期라는 兩分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國家 없는 韓民族의 抵抗史로부터 國家를 形成한 韩民族의 創造的 發展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3.1運動의 결과로 탄생된 臨政이라는 國家形成을 注目해야 하며 그것은 곧 우리 의 3.1運動이 日帝에 抗拒하는 단순한 民族의 獨立的抵抗만이 아니고 새로운 近代國家를 이루하려는 創造的 民族獨立運動이었다는 획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歷史의 主體를 民族的 側面과 國家的 側面으로 兩分시킬 때 韩民族의 民族的 側面에서만의 民族史(1910~1919)를 다시 民族的 側面과 國家的 側面이라는 兩面의 民族史로 前進시켰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總督政治의 歷史展開는 韩民族이란 主體와 그 韩民族의 意志가 總督의 植民統治를 變質시켰던 3.1運動이라는 韩民族의 近代的 大衆動員(mass mobilization)⁽⁹⁾을 일으키고 아울러 거기에 다른 새로운 政治文化를 培養하였다는 點에서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三. 總督政治 第二期

1. 政治文化的 特色—憲兵警察政治

總督政治 第一期의 政治體制의 特色은 한 마디로 憲兵警察政治이다⁽¹⁰⁾. 이 憲兵警察政治는 世界植民統治史에서 일찌기 그 類例가 없었던 악랄한 武斷專制體制로서 그것은 근 半世紀에

(8) 이점에 대하여는 崔昌圭, 近代韓國政治思想史, 一潮閣, 1972 “民族運動篇” 參照.

(9)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8. Chapt. 6, “Mass Mobilization”.

(10) 이 用語는 日人們에게서도 使用되고 있다. 田保橋 潔, 朝鮮統治史論稿(遺稿), 影印再版本, 서울, 成進文化社, 1972.

걸쳐 진행되어 온 日帝의 韓半島 侵略政策의 결과였다.

즉 日帝의 韩半島 侵略政策은 이미 1876年 開港에서 본격화되는 바, 이같은 侵略政策은 總督政治에 이르기까지 대략 다음과 같은 2段階를 거치고 있었다. 즉 1876년에서부터 1905년에 이르는 약 30年 期間중에서 주로 侵略이 開港이란 不平等條約을 통하여 經濟的 측면에서 그 前哨的으로 이루어진 初期 段階는 開港(1876年)에서 甲午更張(1894年)에 이르는 약 20年間이었으며 그뒤 그것이 內政干涉이나 外交抑制를 통하여 政治的으로 本格化된 段階는 바로 甲午更張(1894年)에서 第二次 韓日協約(1905年)에 이르는 약 10年間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이 근 30여년에 걸쳐 다져진 經濟的, 政治的인 侵略政策이 드디어 그 強壓으로서 外交權을 빼앗는 保護植民狀態로 制度化되었을 때 그것이 곧 總監府라는 저들의 政治組織으로 구체화 되었는 바 이 總監府를 中心으로 한 保護統治 5개년의 經驗에서 저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热火같은 韓民族의 抵抗을 體驗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總監府 保護統治의 經驗에서 장근 30여년간이나 다져온 저들의 侵略政策의 기반이 송두리채 動搖됨을 目擊한 日帝의 侵略意慾이 보다 근본적으로 再檢討되어 더욱 組織的으로 強化된 統治形式이 바로 總督政治였기 때문에 그一期政治에서 이루어진 憲兵警察政治는 말하자면 그동안 進行되어온 經濟的 政治의 侵略이 마지막 軍事力を 통하여 더욱 強化되는 侵略의 包括的인 制度化 過程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憲兵警察政治의 特色은 한 마디로 軍事力이 統治組織의 根幹을 이루는 軍事專制體制로 要約된다. 이것을 다시 당시 總督의 權限과 地位를 통하여 살펴 보면

① 總督은 반드시 陸海軍 現役大將에 限하여 任用될 수 있으며

② 天皇에 直隸되어 委任된 範圍內에서 陸海軍을 統率하고 韓鮮防備를 掌握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總督의 權限속에는 모든 韓鮮駐屯軍에 대한 統率權이 있었으며 이 統率權을 통하여 總督은 韓鮮駐屯軍을 必要에 따라 滿洲 및 沿海州에 派遣할 權限까지 掌握하고 있었다⁽¹¹⁾. 이것은 이미 韩半島를 日本國土의 一部로 보고 그 韩半島를 大陸에 대한 國土防衛의 第一線으로 본 日帝의 軍事的 目的이 숨겨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당시 總督統治는 保護國에 대한 植民統治로서 보다는 軍事平定地域의 一部로서 새로운 大陸侵略을 위한 軍政地域으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性格은 결국 總督政治 第二期 後半에서부터 韩半島를 大陸侵略을 위한 軍事兵站基地로서 가혹하게 착취하는 總督政治 末期現象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같이 憲兵警察政治를 이끌던 당시의 總督에게는 軍事上 權限 뿐만이 아니라 政治 行政的으로도 또한 莫強한 權限이 부여되어 있었으니 즉 總督에게는 內閣總理大臣을 거쳐 天皇

(11) 田保橋潔, 前揭書, p.63.

에게 上奏하여 裁可를 받는 規定이 있을 뿐 누구의 指揮監督도 받으라는 規定이 없었다. 그 것이 곧 一人軍事專制를 가능케 하였으며 그 결과 總督에게는 勅裁를 거쳐 法律命令에 代身하는 制令發布權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 制令發布權은 당시 總督政治構造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니 즉 당시의 韓半島에는 形式上 日帝의 國內憲法이 通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實踐하는 個別法律은 따로 施行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모든 法律은 바로 이 制令을 통하여 實現되었기 때문에 總督이 가진 이 制令發布權은 그대로 韓半島內의 모든 立法權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立法權行使에 있어서도 總督의 制令發布에는 勅裁만이 必要한 뿐 樞密院의 諮詢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써 그 立法權은 거의 自決的 專制權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第一期 憲兵警察政治에서 文官의 長官으로서 임명된 政務總監이 있었고 그것은 外形上으로 軍人長官인 總督과 同等한 職階에서 兩分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마는 第一期 總督府職制上 文官長官인 政務總監을 武人長官인 總督의 한낱 補佐機關으로 設置하였던 그 政治史的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당시의 憲兵警察政治의 性格의 一端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 같이 憲兵警察政治로 특징지워지는 第一期 總督政治의 特색은 비단 그 統治組織의 性格에서만이 아니고, 第二次韓日協約이 이루어지던 統監府設置에서부터 韓民族의 抵抗意識속에서나 또는 그 國際關係的 性格에서 분명히 명시되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당시 第二次韓日協約에 반대하던 義兵들의 抗舉文에서 살펴보면

『……馬關條約 以來로 日俄宣戰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大韓의 自主獨立을 丁寧 말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領土를 保全해 주겠다 약속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면서도 이제 우리의 賊子 坐鎔을 피어 처음에는 議定書를 만들더니 종래에는 우리 逆臣 齊純을 피어 이제 新條約을 만들어 심지어 國中에 統監府까지 設置하고 外交權을 日本에게 넘겨준다 하니 여기서 우리 4千年 疆土와 三千里 人民은 드디어 저들의 内地屬民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保護國으로만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즉 屬民이 된다면 오히려 저들의 民과 거의 平等對得하여 그 住居를 보전할 수는 있어 나라는 비록 亡하지만 人種은 오히려 不滅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以前까지의 不法不道로 볼 때 저들은 이 나라안에 우리의 人種을 결코 남겨 놓지 않을 것이니 저들은 우리를 모두 땅에 파문어 죽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광막한 不毛地에 몰아내고 저들의 人種을 이 땅에 移植시킬 것이다……』⁽¹³⁾.

여기서 統監府에서 비롯되는 日帝의 植國統治는 이미 世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위 保護國狀態의 内地屬民이 아니고 人種의 生存權이 근본적으로 抹殺당하는 歷史의 完全한 斷絕로⁽¹⁴⁾ 의식되고 있었다.

(12) 總督은 Gouverneur général로 政務總監은 gouverneur civil로 되어 있다(田保橋, 前揭書, p. 64).

(13) 丙午 淳昌義兵의 布告八道士民(日星錄 卷四).

(14) 그것이 곧 “易人種之計”로 表現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같은 文脈속에서 民族의 生存과 직결되는 自主를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呼訴하고 있었다.

『……옛날 나라가 亡할 때는 宗社만이 亡하더니 오늘날 나라가 亡하는데는 人種도 함께 滅하는구나. 옛날 나라가 滅할 때에는 兵革(戰爭)을 가지고 하더니 오늘 나라가 滅하는데에는 契約을 가지고 하는구나. 兵革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勝敗의 數나 있지마는 契約을 가지고 하니 스스로 覆亡함에 뛰어들고 있구나.……오후라 지난 十月 二十一일의 變(第二次韓日協約)은 이 혹시 온 世界 古今歷史에서 일찌기 있었던 일이냐? 우리에게 隣國이 되되 스스로 國交하지 못하고 他人으로 하여금 代交케 한다면 이는 나라가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土地와 人民이 되되 능히 스스로 自主하지 못하고 他人으로 하여금 代監케 한다면 이는 君(主權)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없고 君主가 없으면 모든 우리 三千里 人民은 모두 奴隸가 되고 臣妾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저들의 狐欺狙詐한 術策으로 볼 때 이 나라 안에 우리 人種을 결코 남기지 않을 것이 分明하니 우리가 비록 奴隸나 臣妾이 되어 살고자 해도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다……⁽¹⁵⁾』

이같이 總督政治로 구체화 된 日本의 侵略이 일찌기 史上 類例 없이 가혹한 것으로 의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義兵運動들은 주로 侵略의 内容을 國際法(國際輿論)이나 人道主義에 호소하는 外交的 方法을 並行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단순히 義兵들의 軍事的 劣勢의 결과만이 아니고 당시 侵略者 日帝가 加하려는 國際的 不平等의 内容이 그만큼 人類의 常識을 벗어난 類例 없이 가혹한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같이 類例 없이 가혹한 國際的 不平等이 韓半島에서 侵略統治組織으로 制度化된 것이 바로 憲兵警察政治였던 것이다.

이 같은 侵略의 가혹성과 그것을 지적하여 國際輿論에 호소한 당시 義兵들의 主張을 그들 舉義疏에서 찾아보면

『……條約을 勒構하여 侵奪을 迫行하니 이제 國家라고 남은 것은 虛名 뿐이다.……宗社를 保全할 길이 없고 生民이 魚肉이 된지가 이미 오래다. 自古로 다른 사람의 國家를 滅하고 다른 사람의 土地를 빼앗는 것이 어찌 限이 있으리오마는 저들 倭와 같이 狡하고 凶한 것은 없었다.……이제 저들 倭는 마침내 易人種하는 毒謀를 行하여 移民條例를 不日 施行할 것이다.……이에 우리는 義旗를 풋고 次第로 北上해 올라가 伊藤博文과 長谷川好道등 諸倭를 불르고 各國의 公領使들을 會同시켜 크게 談辦을 열어……우리의 國權을 侵奪하고 우리의 生民을 虐害한 前後勒約들을 모두 萬國公論에 付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어 國家로 하여금 自主主權을 잃지 않게하고 生民으로 하여금 易種之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¹⁶⁾

(15) 前揭, 日星錄, 卷 4.

(16) 丙午義兵 倘義討賊疏(勉菴先主文集 卷五 疏)

여기서도 日常의 侵略은 國家的 側面에서의 主權의 薬失만이 아니요 그 民族的 側面에서의 生存權의 剝奪까지 포함한 韓民族 自存의 全的인 药失로 意識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같은 類例없는 非人道의 侵略을 紛彈하기 위하여 義兵들은 萬國公法과 世界輿論에 呼訴하려는 外交的 方法을 指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곧 그같은 侵略政策이 統治體系로 制度화된 總督政治의 그 第一期의 性格으로서 우리가 浮刻시키려는 署兵警察政治에 대한 政治文化的 배경을 說明해주고 있는 것이다.

2. 統治組織

1910年 合併 당시 韓半島에 있어서의 統治組織의 急激한 變化를 피하기 위하여 우선 既存의 統監府를 그대로 繼承하고 여기에 舊韓國政府 所屬官廳들을 適宜縮少시켜 吸收시키는 方向에서 總督府의 統治組織은 출발되었다.

즉 舊韓國政府 所屬官廳 가운데에서 內閣, 表勳院(賞勳局) 및 會計檢查局을 廢止시키고 學部를 축소시켜 内部의 一局으로 흡수시키는 외에 内部, 度支部, 農商工部를 그대로 吸收시키고 또 統監府의 司法部를 總督府의 司法部로 하였으며 여기에 다시 總務部를 新設하였으니 즉 新設된 總督府는 總務部, 內務部, 度支部, 農商工部, 司法部 등 五部로 成立되었다.

各部는 長官이 管掌하고 그 각부 밑에는 局을 두었으며 그 밖에 外局으로 取調局, 鐵道局, 通信局, 臨時土地調查局, 專賣局, 印刷局 등을 設置하였다.

이것을 第一期 總督政治의 末尾에 該當하는 1919年代를 기준으로 하여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總督과 政務總監을 頂上階序로 하여 거기에 直屬된 中央의 統治組織은 총 6部 16局課로서

- ① 總督官房……秘書課, 武官室
- ② 總務部……外事局, 人事局, 會計局, 文書課
- ③ 內務部……地方局, 學務局, 庶務課
- ④ 度支部……司計局, 司稅局, 稅關工事課, 庶務課
- ⑤ 農商工部……商工局, 殖產局, 庶務課
- ⑥ 司法部……(內局缺음)

여기에 다시 總督府 所屬官署들로서 直接管轄하는 各道(府, 郡, 面) 外에

- ① 中樞院 ② 取調局 ③ 警察總監府 ④ 裁判所(法院, 檢事局) ⑤ 專賣局 ⑥ 通信局
- ⑦ 鐵道局 ⑧ 臨時土地調查局 ⑨ 印刷局 ⑩ 稅關 ⑪ 監獄 ⑫ 學校등이 設置되어 있었다⁽¹⁷⁾.

(17) 이 官制는 1912年(明治 45年) 4月의 第一次 官制改正과 1915年(大正 4年) 4月의 第二次官制改正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朝鮮總督府編, 施政二十五年史, 京城昭和 10年 및 文定昌, 軍國日本 朝鮮占領三十六年史, 서울, 柏文堂 참조.

물론 中央의 局들에는 다시 配分된 傘下의 課들이 있었으니 總務部의 會計局에는 經理課·營繕課, 內務部의 地方局에는 地方課, 土木課, 衛生課, 學務局에는 學務課, 編輯課, 度支部의 司稅局에는 稅務課, 關稅課, 司計局에는 豫算決算課, 財務課, 農商工部 商工局에는 商工課, 鐵務課, 殖產局에는 農務課, 山林課, 水產課 등이 각각 存在하고 있었다.

이 같은 官制를 中心으로 하여 同期間內 總督 統治體制의 特色을 정리하여 보면

(1) 獨立된立法機關의 不在

韓國에 있어서 日本의 本國法이 部分的으로 通用되는 것도 있었으나 原則的으로 모든 統治는 「朝鮮總督의 制令」을 그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總督統治體制에서 唯一한立法機關은 바로 朝鮮總督自身이었다.

그立法節次를 明治 43年(1910年) 8月 29日字 勅令 324號를 통하여 다시 살펴보면 “朝鮮總督은 法律을 要하는 事項을 그의 命令(制令)에 의하여 規定할 수 있었으며” 이 制令은 議會를 거침이 없이 內閣總理大臣을 거쳐 直接 天皇의 勅裁를 얻도록 되어 있었는 바, 緊急時에는 대바분 이러한 節次도 거침이 없이 직접 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總督의 立法過程(政策決定이나 立法意思決定)에 投入機能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本國政府의 政策指示(訓令)와 行政幕僚들의 제한된 助言 뿐이었다.

이 같은 立法過程은 물론 政治過程은 고려함이 없이 오직 統治過程만을 強化決行하려는 帝國主義的 植民統治政策의 結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시 歷史的으로 整理할 때 그것은 일찍이 韓民族의 政治史에서 가져보지 못하였던 독특한 專制軍國統治體制였던 것이다. 즉 1910年에 사라졌던 朝鮮朝의 統治體制만 하여도 물론 立法은 國王 一人의 命令(즉 傳旨, 教旨, 教令등)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政策決定에 參與 議決하는 一定한 投入機能(議政府의 堂上官 50~60人, 上疏, 啓, 議, 次對, 輪對등)과 合理的인 議決 및 統制節次(滿場一致의 原則, 反覆啓言制, 署經이란 일종의 批准制등)을 통하여 그 政治過程은 가장 원활히 펼쳐 있었고 그 政治文化는 극히 爲民的인 機能性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¹⁸⁾.

따라서 第一期 總督政治는 그 統治體制면에서 우선 그것이 韓民族의 政治的 意思를 投入하는 政治過程이 가장 막히고 立法過程이 가장 專制的이었던 다시 말하여 가장 硬塞된 統治體制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統治體制의 性格은 물론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거니와 한편 憲兵警察政治하는 史上 類例 없는 植民統治의 또 다른 側面은 다음과 같은 面에서도 그 本質이 說明되는 것이다.

이 같은 總督의 立法過程에 投入機能을 담당하는 外形의in 機構를 가장하여 中樞院制가 設立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中樞院制는 總督의 統治機構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니⁽¹⁹⁾ 즉 中樞院은 「朝鮮總督에 隸屬되어 朝鮮總督의 諮問에 應하는 곳」으로 되어

(18) 拙著, 朝鮮王朝行政史(近世編), 博英社, 1970年, 第三節 朝鮮王朝의 政策決定過程 참조.

(19) 이는 日本人 學者 자신들도 承認하고 있다. 田保橋 潔, 前揭書, p.65.

있었는바,

첫째, 그構成員(顧問 贊議 副贊議등)은 모두 官選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下向的 統治體系의 部分的 補助機關이었으며

둘째, 그것은 立法部로서 獨立된 것이 아니고 行政의 總轄者 總督의 隸屬機關(議長은 政務總監이 兼任함)으로서 獨立 立法部의 機能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合併에 有功한 韓國人에 대한 禮遇機關에 不過하였다⁽²⁰⁾.

(2) 憲兵警察體制

統監府時代부터 警察業務에 관해서는 朝鮮駐屯 日本軍隊의 關與가 本格化되었었다. 즉, 1906年 8月 勅令 第205號 韓國駐屯軍司令部 條例에 의하여 京城에 駐在하는 韓國駐屯軍司令官이 韓國防衛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外形的으로 韓國防衛라는 對外的 國防任務에만 연결시키고 있었지만 內容的으로는 國內的 警察任務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으니 이미 露日戰爭以來 日本의 駐屯憲兵隊가 韓國人 武力抗日鬪爭을 鎮壓한다는 名目으로 韓國內 保安警察機能에 關與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급기야 一般行政 내지 司法警察에까지 日本 憲兵隊가 직접介入하게 되었다⁽²¹⁾.

總督府 設置以前의 舊 大韓帝國에 대한 日本의 警察權은

- (1) 警務顧問系
- (2) 統監府 警察系(統監府警務部→各理事廳警察) 및
- (3) 日本 本國 外務省 警察系(領事裁判權에 의한) 등으로 三元化되어 왔다.

이것이 統監府 設置에 따라 統監麾下의 軍司令官으로 하여금 軍事警察을 장악케 하고 이를 韓國의 治安維持에任케 함으로써 韓國에 있어서 日本 軍事警察의 一元化를 期한 후 1910年 6月 24日 韓國警察 事務의 委任에 따라 韓國과 日本의 兩 警察組織을 統監麾下로 統合시켰으니 여기서 軍事警察인 憲兵과 一般警察이 完全히 合一된 憲兵警察 體制가 確立되었던 것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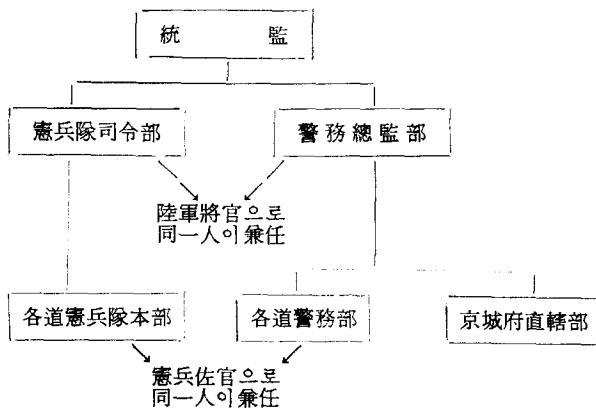
이를 圖示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같은 憲兵警察制度가 合併後에도 그대로 存續維持되었으니 즉 合併直後인 1910年 9月 10日에 發表된 朝鮮憲兵隊條例를 보면 朝鮮總督麾下의 警務總長을 朝鮮駐屯 憲兵司令官인

(20)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오히려 朝鮮朝의 中樞院(職銜없는 高級官人們의 禮遇의 待期所)나 更張以後의 中樞院(外形的인 名譽職)과 性格이 비슷하며 또 現實의으로 總督時代 中樞院은 舊韓末의 中樞院을 다시 復設하는 形式으로 設置하며 廢官된 前職官이나 有功者들을 吸收하였던 것이다.

(21) 朝鮮總督府, 前揭 施政二十五年史 pp. 29~30.

(22) 前揭 施政二十五年史 pp. 30~32.



陸軍將官으로 兼職시킴으로써 警察業務를 統理監督토록 되어 있었다⁽²³⁾.

이들 憲兵 및 警察들이⁽²⁴⁾ 管掌한 機能은 警察 및 衛生業務外에 犯罪直決, 民事爭訟調停檢察 및 執達事務, 陸接國境 稅關事務, 山林監視勤務, 漁業取締, 郵便物保護, 價地의 國語普及, 實業指導, 徵稅援助, 雨量水位觀測, 害獸驅除等 실로 광범위하게 뻗치고 있었다⁽²⁵⁾.

이같은 당시 警察組織의 特色으로서는 各道警務部長(道憲兵隊長이 兼任)을 各地方長官의 幕僚組織으로 存置시키면서도 中央 警務總長의 直接的인 指揮監督을 받게 함으로써 강력한 中央集權의인 警察指揮體制를 維持하고 있었던 점이다.

(3) 司法機關의 隸屬性

1909年 7月 韓國의 司法及 監獄事務를 日本政府에 委託함으로써 同年 10月에 大韓帝國政府의 法部가 廢止되고(統監府에 司法廳設置)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統監府令을 가지고 統監府裁判所를 設置케 하였다(이같은 모든 裁判機關들은 統監에 隸屬). 이들 統監府裁判所들은 韓日合併初에 朝鮮總督府 裁判所로 그대로 看做 維持되어 오다가 1910年 10月 1일의 朝鮮總督府官制가 實施됨에 따라 그 勅令 第5號로서 統監府裁判所를 朝鮮總督府裁判所로 改稱하였다. 그러나 이 總督府裁判所는 若干의 管轄區域의 變更을 除하고는 대체로 舊統監府時代의 體制와 機能을 그대로 踏襲하였다(즉 高等法院 一個所一京城, 控訴院 三個所一京城, 平壤, 大邱, 地方裁判所 八個所一京城, 公州, 咸興, 平壤, 海州, 大邱, 晉州, 光州등)⁽²⁶⁾.

前述한 裁判所들은 民事 및 刑事裁判外에 非訟事件들을 掌握했으며 同裁判所內에 檢事局을 附置함으로써 司法機關은 總督을 頂點으로 하는 行政府의 一元的인 系線으로서 構成되고

(23) 1910年 9月 10日字 朝鮮憲兵隊條例

(24) 朝鮮總督府, 上揭書, p.34. 之 1910年末 現在 韓國內 憲兵總數는 2,019人, 警察總數는 5,693人이었던 바, 其中 韓國人은 憲兵(全員 補助員) 1,012人, 警察官은 3,428人이었다.

(25) 朝鮮總督府 上揭書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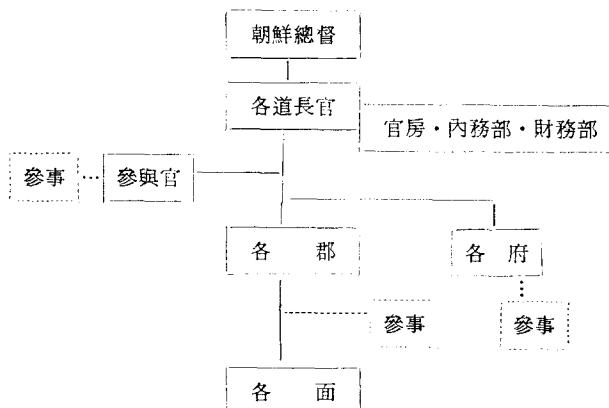
(26) " " pp.39~40.

하였다.

朝鮮總督府時代 第一期에서 대략 以上과 같이 編成된 中央統治體制 外에 이를 契機로 하여 日本政府는 地方制度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改正을 斷行하였다(1910年 9月 30日字 朝鮮總督府 地方官 官制).

- (1) 統監府時代의 「觀察使」를 滅하고 각道의 長을 長官이라 稱하여 勅任官으로 補함. 각道의 長官은 朝鮮總督에 隸屬하여 法令을 執行하고 管內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 所屬官吏를 指揮監督한다.
- (2) 道長官은 道行政의 執行에 關하여 管內의 警察官을 使用할 수 있으며 또 管內의 幸福과 安寧秩序 維持를 위하여 警察上 取締를 要할 때에는 道警務部長으로 하여금 必要한 命令을 發하게 하거나 또는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음.
- (3) 各道에 長官官房 及 內務部 財務部등 二部를 設置하고 同部長에는 事務官으로서 充當함(1915年에 第一部, 第二部로 改稱).
- (4) 各府에 府尹 郡守를 두어 奏任官으로 이에 補하고 面에는 面長을 두어 이를 判任待遇로 함.
- (5) 統監府時代의 財務監督局과 財務署를 滅하며 財務監督局 事務는 道財務部에, 財務署事務는 이를 府·郡에 引繼시킨다.
- (6) 統監府時代의 理事廳을 滅止하며 그의 事務를 種別에 따라 道와 府·郡에 分掌시킨다.
- (7) 「參與官」을 두어 (各道 一人一韓國人) 道長官의 諮問에 應하게 하고 또는 道와 府·郡에 名譽職인 「參事」를 두어 (道에 3人, 府·郡에 2人) 각각 諮問에 應하게 한다.

이 같은 地方制의 改編은 外形의으로 地方分權의行政體系의 強化인듯 보이지만 그 内容에 있어서는 總督政治이후 侵略을 그 經濟的 측면에서 더욱 本格화하기 위한 制度의 裝置이며 이로서 統治體系는 全國的 組織化規模로 制度化를 加一層 深化하였던 것이다.



3. 人事・財務行政

韓國에 대한 武斷支配를 일단 憲兵警察政治란 특수한 形式으로 밀고나온 日本의 對韓政策은 우선 總督府內의 人事行政面에서도 그대로 反映되었으니 그것은 한마디로 韓國人에게 지극히 制約의이었던 엘리뜨 充員過程으로 說明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선 總督府時代 官吏에 대한 다음과 같은 韓國人 對日本人 構成比資料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920年		1927年		1943年			
	總督府 直屬機關	附屬機關 包 合	全官吏	高等官	勅任	奏任	判任	雇員
韓國人 數	318	331	16,000	5	7	626	29,058	51,061
%	31.4	28.1	35.9	1.4	4.6	13.9	37.6	64.9
日本人 數	693	686	28,500	129	145	3,880	48,156	27,508
%	64.5	71.9	64.1	98.6	95.4	86.1	62.4	35.1

이 統計上 資料를 分析하면, (27) 첫째 官吏의 人事充員에 있어서 韓國人과 日本人 構成比間의 지나친 隔差(約 1:3)를 들수 있고, 둘째 이같은 隔差는 同一한 韩國人과 同一한 日本人內에서의 高級官僚와 下級官吏들의 構成偏差 때문에(즉 韩國人の 構成比는 下級官吏에 偏重한데 대하여 日本人 構成比는 高級官僚에 偏重) 더욱 深化되었었다(즉 高官의 構成比는 韩國人 對日本人이 約 3:97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같은 現象은 한 마디로 憲兵警察統治體制에서 韩國人 文官엘리뜨의 登場은 근본적으로 制約되었다는 사실과도 직결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統治體制의 投入面의 政治過程은 거의 存在치 않는 반면 그 統治過程만이 強調되던 總督統治體制下에서 그나마 社會價值를 확보 내지 창출하는 機能을 담당할 수 있었던 官吏들을 充員하는 通路를 日本人들만이 거의 獨占함으로서 韩國社會에 대한 諸社會價值를 근본적으로 兩分配 내지 收奪하려는 저들의 政策目標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人事行政을 달성하기 위한 저들의 官職構造는 다음과 같이 철저한 階級制에 立脚하고 있었다.

	等級	官稱	備考
高 等 官	1~2	勅任(第二級)	
	3~9	奏任(第二級)	試補制
下 級 官 吏	1~4	判任(第三級)	見習制
雇 用 員		雇員(第四級)	

※ 親任官은 除外되었음.

(27) 이 表는 ① Andrew J. Gradjanzer, *Modern Kore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 p.60. ② George M. McCune, *Korea Today*, London, Allen and Unwin. 1950. p.25 및 ③ 高權三, 近世朝鮮興亡史, 東京, 考古書院, 1933, pp.261~2를 기초로 作成함.

階位別 官僚構造를 보면 合併初에 比하여 合併末에 잘 수록 上位官僚가 占한 比重이 減少하고 있는데 比하여 이에 대한 下位官僚가 占한 比重은 增加하고 있었다. 이를 圖示하면

職 位	年 度		
	1911年	1913年	1943年
勅 任 官	0.27%	0.23%	0.11%
奏 任 官	6.59%	4.38%	2.80%
判 任 官	37.01%	37.57%	40.08%
雇 員	46.13%	47.82%	49.01%

로 나타난다⁽²⁸⁾.

이는 곧 總督政治가 時間의으로 深化되어 갈수록 統治體系가 一般民衆속으로 더욱 파고 들어 侵略政策이 더욱 組織化되어 갔음을 의미하며 이를 다른 측면에서 評價하면 總督政治 初期 上位階層官僚 水準에서 이루어진 政策的 측면에서의 侵略이 점차 下位階層官僚를 中心으로 하는 直接的인 施政의 측면으로 더욱 制度化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朝鮮總督은 所部의 官吏들을 統督하는 바

- (1) 奏任官의 進退는 內閣總理大臣을 거쳐 이를 上奏하며
- (2) 判任官 以下 官吏의 進退는 自身이 직접 專決하였다.

따라서 奏任官 以下(勅任・親任包含)은 本國政府의 權限事項이었으며 判任官 以下는 總督의 專管事項이었다. 그러나 奏任官은 總督이 그 上奏權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해서 그 實質的인 專行權은 總督에게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같은 中央의 人事行政을 管掌하는 機關은

- (1) 1910年 合併直後에는 「總務府人事局」에서 人事行政을 管掌하였다(이때에는 總督官房은 있으나 同官房에는 秘書課와 武官室만이 있었다).
- (2) 1912年 第一次 官制改革으로 總務部가 滅止되고 總督官房에 「總務局」이 設置됨으로써 모든 人事行政은 이 總務局에서 管掌하였다(※ 이것은 總督政治 第二期에 들어가서는 總督官房에 「人事課」를 두어 여기에서 人事行政을 管掌하게 된다).

즉 이를 좀 더 살펴보면 1912年 11月 總督訓令 第11號 朝鮮總督府 事務分掌規程(이는 1910年 9月의 勅令 第354號 朝鮮總督府官制에 의거한 것)에는 總督官房의 總務局內에 總務課, 人事課, 會計課 및 印刷所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同 人事課에서 다음 事項을 管掌토록 되어 있었다⁽²⁹⁾.

- (1) 官吏 嘱托員 및 雇員의 進退 및 身分에 關한 事項

(28)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1910~11 p.28에서 作成.

(29) 1912年 11月 總督府 訓令 第11號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第3號.

(2) 李王職 職員의 進退 및 身分에 關한 事項

(3) 朝鮮의 貴族에 關한 事項

(4) 褒賞에 關한 事項

(5) 爵位 및 叙勳에 關한 事項

(6) 恩給 및 遺族扶助料에 關한 事項 등

이를 地方行政의 측면에서 보면 1910年 9月의 勅令 第357號 朝鮮總督府 地方官官制는 各道에 長官官房, 內務部 및 財務局을 두게되어 있는 바⁽³⁰⁾, 이를 다시 1910年 10月 總督府訓令 第3號(道事務分掌規程)로서 同長官官房에 庶務係와 會計係를 두어 同庶務係로 하여 금官吏, 嘴托員 및 雇員들에 대한人事行政을 擔當토록 하였다⁽³¹⁾.

以上과 같은人事行政을 官吏의 任免과 懲戒와 같은 그 運營面에서 잠시 살펴보면

(1) 總督 및 政務總監은 親任官으로서 日本天皇이 親任하여(中樞院 副議長은 親任待遇)

(2) 勅任官 및 奏任官은 內閣總理大臣이 奏請하여(各省所屬 官吏는 內閣總理大臣을 經由하여 各省大臣들이 奏請) 天皇이 任命하였다⁽³²⁾. (따라서 朝鮮總督은 奏任官의 進退에 대하여 內務大臣을 거쳐 內閣總理大臣을 經由하여 上奏하였다⁽³³⁾)

(3) 判任官 以下의 任免은 朝鮮總督이 專行하였다.

任用資格要件은 一般的의 文官任用令⁽³⁴⁾의 適用을 받았으나 朝鮮總督府의 官吏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特別規程이 適用되고 있었다⁽³⁵⁾.

(1) 朝鮮總督府 및 所屬官署의 奏任文官은 試補, 判任文官은 見習으로부터 이를 採用한다 (但 教官, 技術官, 特別任用에 依한 者 및 特別한 事由있는 경우는 例外).

(2) 그러나 下記의 條件에 該當하는 者들은 前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直接 朝鮮總督府 또는 그 所屬官署의 判任文官에 採用할 수 있다.

Ⓐ 帝國大學 卒業者

Ⓑ 高等學校 卒業者

Ⓒ 高等師範學校 卒業者

Ⓓ 官立 公立 專門學校 卒業者

Ⓔ 京城專修學校 卒業者

Ⓕ 陸軍一般士官, 下士, 文官採用規則에 의거 判任文官 資格을 有한 者

Ⓖ 文官任用令 第6條 第7號(五年以上 雇員으로 勤務한 者)에 해당하는 者로서 見習採用

(30) 1910年 9月 勅令 第357號 朝鮮總督府 地方官官制 第12條.

(31) 1910年 10月 總督府訓令 第3號 道事務分掌規程 第3條.

(32) 1912年 6月 勅令 第114號 朝鮮總督府官制 第2, 第8條.

(33) 前記 官制 第6條.

(34) 1912年 8月 勅令 第261號.

(35) 1912年 8月 總督府令 第84號 朝鮮總督府及 所屬官署 文官採用에 關한 件.

者에게 課하는 體格試驗과 學術試驗에 合格한 者

⑨ 見習採用時에는 體格檢查와 다음의 學術試驗을 行함

ⓐ 日本人은 韓國語, 韓國人은 日本語

ⓑ 作文

ⓒ 法學通論 및 行政法大意

그러나 이러한 學術試驗은 朝鮮總督府에서 行하는 文官普通試驗이나 朝鮮人判任文官試驗에 合格한 者에게는 課하지 않았다.

(다음號 계속)